

#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

2006.10.01. 제정  
2010.08.30. 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'본교')의 명예총장 추대 절차와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'명예총장'이라 함은 본교 직제규정 제8조의2에 명시된 직위를 말한다.

**제3조(추대절차)** 총장은 직제규정 제8조의2의 1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대학 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명예총장 위촉을 제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심의 후 명예총장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기)** 명예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명예총장은 총장이나 이사장이 사안별로 위탁하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대학발전에 관한 자문과 조언
2. 학내외 주요 행사 등에서의 학교를 위한 대외 활동
3. 기타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

**제6조(예우)** ① 명예총장은 본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.

② 명예총장에 대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역할에 따라 활동비, 연구비, 강의료 또는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기타 명예총장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경조사비나 명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추대의 취소)** 명예총장이 그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대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사장은 명예총장의 추대를 취소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명예총장으로 추대된 자로서 동 추대에 대해 이사회에서 승인이나 추인을 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